

20.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정: 2005. 10. 28.

개정(제8차): 2024. 9. 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학위과정 변경 및 통합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통합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각 과정의 신입생 모집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의 신청자격 및 절차)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 또는 통합과정 중단(이하 “학위과정 변경”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

가. 석사학위과정 2학기부터 3학기까지 재학 중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에 신청 가능함 (4학기 진입 시 신청 불가)

나. 석사학위과정 2학기 재학 중 신청한 경우는 18학점 이상, 석사학위과정 3학기 재학 중 신청한 경우는 2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이어야 함

다. 소속 학과 내규를 충족하여야 함

라. <삭제>

2. 통합과정 중단

가. 통합과정 3학기부터 7학기까지 재학 중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에 신청 가능함 (8학기 진입 시 신청 불가)

나. 소속 학과 내규를 충족하여야 함

다. <삭제>

② 학위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결재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승인 요청 되어야 하며, 대학원장은 입학연도 별로 다음 각호의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요청된 학위과정 변경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촌캠퍼스 소속 석사

2. 국제캠퍼스 소속 석사

3. 신촌캠퍼스 소속 박사

4. 국제캠퍼스 소속 박사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②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③ 대학원은 통합과정 중단을 승인받은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1항,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는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